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926호

다.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라.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 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 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79억 49백만 원 증가함에 따라
- 나.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을 381억 28백만 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초 (A)	1차 변경 ※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11%)
경상적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공공예금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임시적세외수입	_	-	19	19
기타수입	-	-	19	19
그외수입	_	-	19	1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44,683	44,683	44,683	_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_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617	71,617	79,566	7,949 (11%)
보전수입등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 감(B-A) (증감률)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비융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소계		87,558	87,737	87,737	179 (0.2%)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7,558	87,737	87,737	179 (0.2%)	
			소 계	87,126	87,126	87,126	_
	1	다동공원	시설비	87,108	87,108	87,108	-
		조성사업	감리비	15	15	15	_
			시설부대비	3	3	3	_

	세운 5-2구역 내 _	소 계	432	611	611	179 (0.2%)	
	2	공공임대상가 건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 업비	432	611	611	179 (0.2%)
행	행정운영경비		소 계	10	10	10	-
	기금 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0	10	-
재무활동		동	소 계	30,179	30,000	38,128	7,949 (26.3%)
	여유	우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30,179	30,000	38,128	7,949 (26.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이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79억 49백만 원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재무활동(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을 당초 계획 대비 26.3% 증가한 381억 28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4.5.27일 시장 제출하여 '24.5.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1조제2 항¹)에서 정책사업²)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 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2024년 기금수입 계획 >

< 2024년 기금지출 계획 >

-- (단위:백만 원)

		(단위	· 비: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7,747	125,875	8,128 (6.9%)
부담금	44,683	44,683	-
이자수입	1,447	1,607	160 (11.1%)
그외수입	-	19	19
예치금회수	71,617	79,566	7,949 (11.1%)

		(ピエ	1:멕만 원 <u>)</u>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u></u>	117,747	125,875	8,128 (6.9%)
비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비)	87,558	87,737	179 (0.2%)
행정운영경비	10	10	-
재무활동 (여유자금 예치)	30,179	38,128	7,949 (26.3%)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 <u>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u>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u> 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며, <u>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u> <u>경비 각각을 의미함(「2023</u>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3.7)」 p.296)

나. 검토 내용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 「2024년도 도시재생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도시재생기 반시설 조성'사업(다동공원 조성사업 및 세운5-2구역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에 875억 58백만 원, ▲기금 관리비 10백만 원, ▲여유 자금 예치 301억 7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 중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대책으로 공동사업시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사업이 '24.3 월에 완료되었으며, 민원으로 의한 부대공사 추가시행 및 물가 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잔여 지급액으로 계획된 4억 32백만 원보다 1억 79백만 원 증액된 6억 11백만 원이 지급 결정됨
- 「지방기금법」 제11조³)에 따라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회⁴)를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수입, 기금지출 계획의 총액 변동없이 '비융자성 사업비'(증 1억 79백만 원)와 '재무활동'(감 1억 79백만 원)간 금액을 조정하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u>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4) 「2024}년 제1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일 시: 2024.2.21.~2.23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총8명)

[·]심의 안건 및 의결결과 : 총 3개 안건 / 수정가결

였으며, 정책사업비 1% 미만의 지출금액 변경에 해당하여 지 방의회의 의결 절차는 불필요한 사안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7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심의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총괄관리관→단체	장)		(지방의회 의결)	

< 2024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 원,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 (A)	1차 변경	변경안 (B)	증 감(B-A) (증감률)	
	지 출 합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비성	비융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소계		87,558	87,737	87,737	179 (0.2%)	
	도시	재생기반시설 조성		87,558	87,737	87,737	179 (0.2%)
			소 계	87,126	87,126	87,126	-
	1	다동공원	시설비	87,108	87,108	87,108	-
	'	조성사업	감리비	15	15	15	-
			시설부대비	3	3	3	-
		세운 5-2구역 내	소 계	432	611	611	179 (0.2%)
	2	공공임대상가 건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 업비	432	611	611	179 (0.2%)
행경	행정운영경비		소 계	10	10	10	-
	기금 관리비 시		사무관리비	10	10	10	-
재-	재무활동		소 계	30,179	30,000	38,128	7,949 (26.3%)
	여유	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30,179	30,000	38,128	7,949 (26.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3년말 기금 조성액은 796억 86백만 원으로, 2023년도 당해 사업의 사고이월액 1억 20백만 원을 제외한 자금 795억 66백만 원을 예치금회수(수입)에 반영하여,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 기금운용 총규모는 당초 1,177억 47백만 원에서 6.9% 증액된 1,258억 75백만 원으로 편성됨

< 2023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백만 원)

'23년 총	수입 : 80,986	'23년 총 지	출 : 80,986
'22년말 조성액	'23년 수입액	'23년 사용액	′23년말 조성액
(1)	(2)	(3)	(4=1+2-3)
49,211	31,775	1,299	79,687
■ 이월액('22년→'23년): 240	■ 이 자 수 입 : 2,326	■ 비융자성사업비: 1,291	■ 이월액('23년→'24년): 121
■ 예치금회수: 48,971	■ 과 밀 부 담 금 : 28,625	■기본경비: 8	■ 예치금: 79,566
	■ 그 외 수 입 : 823		

※ 연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금액 (계좌 잔고) 예치금회수(수입) : 당해 연도말 예치금을 다음연도 예치금 회수로 계상 예치금(지출) : 기금의 여규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2024년 기금수입 계획〉

〈2024년 기금지출 계획〉

		(단위	H: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7,747	125,875	8,128 (6.9%)
부담금	44,683	44,683	-
이자수입	1,447	1,607	160 (11.1%)
그외수입	-	19	19
예치금회수	71,617	79,566	7,949 (11.1%)

		(단위	H:백만 원 <u>)</u>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7,747	125,875	8,128 (6.9%)
비용자성사업비 (정책사업비)	87,558	87,737	179 (0.2%)
행정운영경비	10	10	-
재무활동 (여유자금 예치)	30,179	38,128	7,949 (26.3%)

- 2024년 기금 지출계획은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여유자금 예 치비가 기존 301억 79백만 원에서 26.3% 증가한 381억 28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⁵⁾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과밀부담금6)이 전년도 수입계획 현액 220억 79백만 원 보다 65억 46백만 원(29.6%) 초과 수납된 데 기인함
- 기금수입 계획 대비 실제 수납액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수입을 과소 추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세입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오차가 반복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 할 가능성 있으므로, 추계를 정교히 하여 세입오차를 줄이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기금운용계획의 정</u> <u>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⁶⁾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50%는 국비, 50%는 서울시로 귀속되며, 서울시귀속분의 50%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머지 50%는 도시재생기금 세입으로 귀속됨

다. 종합 의견

- '24.3월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잔여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정책사업비)'와 '예 치금' 간 금액을 조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을 1차 변경⁷⁾하였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1% 미만의 지출금액 변경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임
-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은 2023년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여유자금 예치에 당 초 계획 대비 26.3%(79억 49백만 원) 증가한 381억 28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가된 예치금회수 금액을 여유 자금 예치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재무활동으로 보이는 바, 제 출된 변경안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 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기금의 편성·운영 시에는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7) 2024}년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 증액 1억 79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 감액 1억 79백만 원 (제1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